남원시
NAMWON CITY

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.

시 보

www.namwon.go.kr

제37호 2021. 9. 10(금)

선람	기관의 장

공 고

○ 남원시 공고 제2021-1794호 공시송달공고 ---------- 1
○ 남원시 공고 제2021-1801호 수홍1제 지표수보강개발사업 보상계획 공고 ---------- 3
○ 남원시 공고 제2021-1803호 남원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 안 ---------- 5

회람										

발행 : 남원시 / 편집 : 홍보전산과 ☎(063)620-6034

남원시 공고 제2021 - 1794호

공 시 송 달 공 고

『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』 제22조 제3항에 따라 철거·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에게 말소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나, 소유자의 주소불명 등으로 말소처리를 통지할 수 없어 『행정절차법』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1. 공고기간 : 2021. 9. 13. ~ 2021. 9. 28. (15일간)
2. 공고방법 :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, 시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
3. 공시송달 내용

처분의 제목	소유자 현황		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	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
	성 명	주 소		위 치	건축물현황
건축물대장 직권말소 (말소일 : 2021.9.7.)	김○자	전라북도 남원시 주천면 덕치리 산1	건축물 부존재	남원시 주천면 덕치리 57-9	주1 1층 흙벽돌/스레이트 주택 36.1㎡

4. 기타사항

가. 공고기간 만료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.

나. 기타 문의사항은 남원시청 건축과 (☎063-620-6597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1. 9. 13.

남 원 시 장

■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[별지 제11호서식] <개정 2014.7.28>

의 견 제 출 서

※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의견제출인	성명		
	주소		전화번호
의견제출 내용	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		
	당사자	성명(명칭)	
		주소 (전화번호:)	
	의 견		
	기 타		

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제1항(제31조제3항)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의견제출인 (서명 또는 인)

남원시장 귀하

유 의 사 항

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2. 증거자료

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
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
[남원시 공고 제 2021-1801 호]

수홍1제 지표수보강개발사업 보상계획 공고

농어촌정비법의 제2조, 제9조, 제110조의 규정에 의해 시행하는 『수홍1제 지표수보강개발사업』의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 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 제15조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보상계획의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,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내에 그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공익사업의 개요

가. 사업의 명칭 : 수홍1제 지표수보강개발사업

나. 사업시행자 : 남원시 (위탁시행자 :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)

다. 사업의 위치 : 전라북도 남원시 대강면 수홍리 일원

라. 사업의 목적 :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통한 농업생산성 증대 및 수자원 효율적 이용

마. 총사업비 및 사업면적 : 6,414만원, 21.2ha

바. 사 업 내 용

-저수지 : 1개소(수홍1제 : L=230m, H=9.6m) -여방수로 : 물넘이 L=14m, 방수로B=4m, 개거L=80m

-사통 : 취수공 2공(D=0.3m) -용 수 로 : L=1.04km

사. 사 업 기 간 : 2020. 06. ~ 2024. 12. 31.

2.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

가. 토지 및 물건 소재지

연번	소 재 지			지목	지적 (㎡)	현 상 황		지장물 / 시설물 등			등기부등본상 소유자		비고
	면	리	지번			편입지번	편입면적	종별	구조	면적/수량	주 소	성 명	
1	대강	수홍	590-10	유지	11.0	**590-10**	**11.0**				남원군 대강면 수홍리 ***	오 *석	1/2
											남원군 대강면 수홍리 ***	오 *수	1/2
2	대강	수홍	590-2	유지	159.0	**590-2**	**159.0**				남원군 대강면 수홍리 ***	오 *현	
3	대강	수홍	591-1	유지	102.0	**591-1**	**102.0**				남원군 대강면 수홍리 ***	오 *현	1/4
											남원군 대강면 수홍리 ***	오 *일	1/4
											남원군 대강면 수홍리 ***	오 *문	1/4
											남원군 대강면 수홍리 ***	하 *면	1/4
4	대강	수홍	591-2	유지	1,478.0	**591-2**	**1,478.0**				남원군 대강면 수홍리 ***	오 *현	1/4
											남원군 대강면 수홍리 ***	오 *일	1/4
											남원군 대강면 수홍리 ***	오 *문	1/4
											남원군 대강면 수홍리 ***	하 *면	1/4
5	대강	수홍	592-4	유지	365.0	**592-4**	**365.0**				남원시 대강면 수홍리 ***	김 *태	1/4
6	대강	수홍	605	임야	560.0	**605**	**560.0**	콘크리트포장 비닐하우스	시멘트 철재	75㎡ / 1식 각130㎡ / 2동	남원시 대강면 수홍리 ***-*	이 *재	
7	대강	수홍	606	목장용지	1,064.0	**606**	**1,064.0**	축산 우사 비닐하우스	한우 철재/슬레이트 철재	26마리 830㎡ / 1동 130㎡ / 1동	남원군 대강면 수홍리 ***-*	이 *재	
								축산 농산이전	한우 여물 및 기타	64마리	남원시 대강면 수홍리 ***	김 *기	
8	대강	수홍	607	목장용지	946.0	**607**	**946.0**	물탱크 소형관정 비닐하우스	 철재	1식 1식 170㎡ / 1동	남원군 대강면 수홍리 ***-*	이 *재	
9	대강	수홍	607-1	도로	158.0	**607-1**	**158.0**				오산시 고현동 ** 엘지기숙사 **동 ***호	오 *기	
10	대강	수홍	610	전	161.0	**610**	**161.0**	동산이전	여물 및 기타		남원군 대강면 수홍리 ***-*	이 *재	
11	대강	수홍	610-1	도로	37.0	**610-1**	**37.0**				남원군 대강면 수홍리 ***	오 *붕	
12	대강	수홍	611	전	502.0	**611**	**502.0**	감나무 두릅나무 농업용창고	수목 수목 철재	4주 100주 530㎡ / 1동	남원군 대강면 수홍리 ***-*	이 *재	
13	대강	수홍	611-1	유지	351.0	**611-1**	**351.0**				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*	윤 *완	1/2
											남원시 동충리 ***-*	윤 *수	1/2
14	대강	수홍	614-1	유지	76.0	**614-1**	**76.0**				남원시 대강면 수홍리 ***	오 *주	

나. 토지 및 물건조서의 세부내용은 개별통지하며(미등기 소유자, 점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함), 동 조서를 열람기간중 열람장소에 비치 열람.

다. 열람장소 : ①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 (전북 남원시 농고길 25(도통동))
② 남원시청 농정과 (전북 남원시 시청로 60)

라. 공고(열람)기간 : 공고일로부터 15일간 (2021.09.09.~2021.09.23.)

마. 이의신청 방법 :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 / 남원시청 농정과에 서면으로 제출

바. 기타사항 :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정한 기준 및 절차에 의함

3. 보상시기 및 방법

가. 보상시기 : 2021년 11월이후 보상협의

나. 보상가격 결정 :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규정에 의거,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 감정평가액의 산술 평균가액으로 보상금 지급

다. 보상금 지급 : 보상협의에 의한 보상계약 조건에 따라 지급

라.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우편 통지하고, 주소·거소 불명으로 미 송달된 경우에는 본 공고로 대신합니다.

마. 문 의 처 :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 지역개발부 (☎063-620-2075)

바. 기타사항 : 보상계획은 사업여건에 따라 계획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, 토지의 편입 및 제외면적은 추후 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2021년 09월 09일

남 원 시 장

남원시공고 제2021 - 1803호

『남원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』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『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』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9월 9일

남 원 시 장

남원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 안

1. 제정이유

「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제11조제1항 개정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을 필수조례로 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제정 목적,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1조~제2조)
나. 노래연습업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3조)
다.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4조)
라. 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5조)
마. 교육교재, 교육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~제10조)
바. 교육이수자 관리 및 교육불참자 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(안 제11조~제14조)

3. 입법예고기간 : 2021. 9. 9. ~ 2021. 9. 29. (20일간)

4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·개인은 2021년 9월 29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(참조:문화예술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 제출 사항

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)

(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나. 의견 제출할 곳

: 우 55770 / 남원시 시청로 60, 문화예술과

다. 의견 제출 방법

: 서면, 이메일(cds7532@korea.kr), fax(063-620-6707) 및 직접방문 등

5. 기타사항

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관광과 문화예술담당(☎063-620-6151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6. 붙임 : 남원시 노래연습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1부

남원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

제출년월일 : 2021. 09. .
제 출 자 : 남 원 시 장
제안설명자 : 문화예술과장

1. 제정이유

「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제11조제1항 개정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을 필수조례로 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제정 목적,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1조~제2조)
나. 노래연습업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3조)
다.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4조)
라. 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5조)
마. 교육교재, 교육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~제10조)
바. 교육이수자 관리 및 교육불참자 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(안 제11조~제14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
나. 그 밖의 사항
1) 입법예고
- 기 간 : 2021. 9. 9. ~ 9. 29. (20일간)
- 결 과 :
2) 비용추계서 : 비 추계대상
3) 규제예비심사 : 비 심사대상
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완료

남원시 조례 제 호

남원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교육”이란 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.
2. "노래연습장업"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.

제3조(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) ① 남원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 다만,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(영업자가 변경된 경우 포함)에게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
2.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
3.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 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.

제4조(교육의 위탁) ①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시행령”이라 한다)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남원시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.

제5조(교육계획의 수립) ① 시장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1.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
2. 교육일시 및 장소
3. 교육내용 및 방법
4.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
5.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
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6조(교육교재)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

2. 위생교육(친절, 질서, 청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)

3.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
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
제7조(교육실시 방법 등) ①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.

②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. 다만,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(영업자가 변경된 경우 포함)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 시기와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
제8조(교육의 유예 및 면제)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.

1. 천재지변 및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

2. 본인의 질병·사고,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

3.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휴업 신고한 겨우

4.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

5.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

②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,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.

제9조(교육강사) ① 강사는 학계·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.

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고, 강사료 지급기준은 제3조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.

제10조(교육통지서 송부) 시장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·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1조(교육이수자 관리) 시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·비치하고,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
제12조(교육불참자 통지)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3조(과태료 부과)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·징수하여야 한다.

제14조(교육결과 보고)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

남원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

○ 비용추계 대상 여부

-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.

※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

제3조(작성대상)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.

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.

③「지방자치법」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.

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. 단,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
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

붙임 **관련법령**

□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

제11조(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) ①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, 이하 "시장·군수·구청장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, 재난예방,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2. 21., 2020. 2. 18.>

1.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
2.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
3. 그 밖에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2. 21., 2020. 2. 18.>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0. 6. 10., 2019. 12. 3.>

13. "노래연습장업"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.

제36조(과태료)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 <개정 2018. 12. 24.>

1.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

의 견 제 출 서

1. 의견제출 목록		**남원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** 제정조례(안)에 대한 의견
2. 제출자	성명(명칭)	
	주 소	
3. 의 견		
4. 기 타		

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(의견제출 및 처리)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21년 월 일

의견서 제출인 주 소 :
성 명 : (서명 또는 인)
전 화 :

남원시장 귀하

비 고	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. 2.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 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